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변경 안내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

- KB RISE 미국나스닥10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탁계약서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7. 생략 8.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1. ~ 2. 생략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7. 좌동 (신설) 8.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신설) 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신설) 10.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11.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제4조의2에 의해 지정된 해외보관대리인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1. ~ 2. 좌동 (신설) 3. 외국에서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예금에 한함) 또는 단기대출(콜론에 한함)로 운용하는 것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7. 생략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7. 좌동 (신설) 8.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9.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10.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3. ~ 7. 생략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좌동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 7. 좌동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④생략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④좌동 (신설) ⑤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보수) ①~③생략 ④ 1. 최초설정일로부터 2021년 01월 31일까지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9	**제39조(보수)** ①~③생략 ④ 1. 최초설정일로부터 2021년 01월 31일까지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9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2. 2021년 02월 0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1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3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2. 2021년 02월 01일부터 2025년 02월 10일까지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1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3 3. 2025년 02월 1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01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01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0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생략 ② 1 ~ 9. 생략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좌동 ② 1. ~ 9. 좌동 (신설) 10.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 11.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③제2항 제10호의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음과 같다. 1. 건당 결제 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보관비용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기타 부수비용(out of 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투자설명서	수익률 변동성: 19.40%	수익률 변동성: **46.93%**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중략)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x환급비율 *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1'이면 1, '환급비율<0"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중략)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중략)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이익 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 (※2024년말까지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에서 환급 받아 세전 기준가로 환원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중략)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기갱신(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운용실적 등 업데이트)에 따른 변경 포함 ※ 위험등급 변경 없음	

- KB RISE 미국S&P50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탁계약서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7. 생략 8.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생략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7. 좌동 (신설) 8.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신설) 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신설) 10.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11.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7. 생략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7. 좌동 (신설) 8.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9.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10.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좌동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3. ~ 7. 생략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 7. 좌동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④생략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④좌동 (신설) ⑤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보수) ①~③생략 ④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1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3	**제39조(보수)** ①~③생략 ④ 1.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년 02월 10일까지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1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3 2. 2025년 02월 1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01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01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3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0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투자설명서	위험등급 산정기준: 투자대상자산	위험등급 산정기준: **수익률 변동성(34.52%)**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

	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중략)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x환급비율 *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1'이면 1, '환급비율<0"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중략)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중략)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이익 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 (※2024년말까지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에서 환급 받아 세전 기준가로 환원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중략)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기갱신(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운용실적 등 업데이트)에 따른 변경 포함 ※ 위험등급 변경 없음	

- KB RISE 미국S&P50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H)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탁계약서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7. 생략 8.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생략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7. 좌동 (신설) 8.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신설) 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신설) 10.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11.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7. 생략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7. 좌동 (신설) 8.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9.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10.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3. ~ 7. 생략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좌동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 7. 좌동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④생략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④좌동 (신설) ⑤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보수) ①~③생략 ④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39조(보수)** ①~③생략 ④ 1.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년 02월 10일까지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3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1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3 2. 2025년 02월 1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01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01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3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0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중략)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x환급비율 *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1'이면 1, '환급비율<0"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중략)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중략)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이익 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 (※2024년말까지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에서 환급 받아 세전 기준가로 환원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중략)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기갱신(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운용실적 등 업데이트)에 따른 변경 포함 ※ 위험등급 변경 없음 ※ 설정 후 3년 미경과	

- KB RISE 글로벌자산배분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구분	변경전	변경후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중략)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x환급비율 *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1'이면 1, '환급비율<0"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중략)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중략)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이익 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 (※2024년말까지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에서 환급 받아 세전 기준가로 환원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중략)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기갱신(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운용실적 등 업데이트)에 따른 변경 포함 ※ 위험등급 변경 없음	

	※ 설정 후 3년 미경과

- KB RISE 머니마켓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채권)

구분	변경전	변경후
투자설명서	※ 정기갱신(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운용실적 등 업데이트)에 따른 변경 포함 ※ 위험등급 변경 없음 ※ 설정 후 3년 미경과	

2. 변경(예정)일: 2025년 02월 11일(화)